

법령코너

기술표준원 공고 제2008-36호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용품안전기준및운용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2월 21일
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안전기준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취지

전기용품의 안전성 확보 및 안전기준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전기용품안전기준 K60400(형광램프 홀더 및 스타터 홀더)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

2. 주요 개정 내용

가. 전기용품안전기준 K60400의 본문 전체 및 그림의 일부에 대하여 국제규격(IEC 60400)과 같은 체계를 유지 하면서 이해하기 쉽도록 수정하고, 자주 사용하는 용어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며, 오·탈자 등을 수정 보완함

원문	현행	개정
holder	소켓	홀더
build in	조립	내장
cap	베이스	캡
multilamp	멀티	다중램프
impulse	과도전압	충격전압

원문	현행	개정
compliance	적합여부	적합성
check	평가	확인
sample	샘플, 시료	견본
section	절	장
mount	조립, 부착	부착

나. 8.2항과 관련, G5 및 G13 형광램프용 홀더의 감전보호 구조 적합성을 시험할 때 램프를 장착한 상태에서 시험하도록 한 내용을 삭제하여 국제규격과 동일하게 맞춤으로써 램프를 교체할 때에도 감전보호가 되도록 함

다. 10.5 d)와 관련, G5 및 G13 램프홀더의 “홀 치수”를 시험할 때 램프커넥터의 경우 국내 실정에 맞도록 “Go 게이지” 시험을 생략하고 “접촉형성 게이지” 시험만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램프커넥터가 쉽게 빠지는 것을 방지토록 함

3. 의견제출

붙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제출 기한까지 의견서를 기술표준원 전기용품안전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08.03.21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의견 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관련 안전기준을 열람하시려면 기술표준원 홈페이지(<http://www.ats.go.kr>)의 고시·공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술표준원 전기용품안전팀 연락처

○ 주 소 : 경기도 파천시 교육원길 96

○ 전화번호 : 02-509-7242 (fax : 02-507-6657)

붙임 : K60400 신·구문 대조표, 끝.

※ 관련 안전기준을 열람하시려면 기술표준원 홈페이지(<http://www.ats.go.kr>)의 고시·공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